# 제1조 (적용범위)

- ① 적립식예금(이하 '이 예금' 이라 한다)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 제2조 (지급시기)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# 제3조 (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)

- ①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.
- ② 거래처가 제1항의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**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**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 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.

## 제4조 (만기지급금)

이 예금의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**저축금 총액(이하 '원금'이라 한다)과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**(이하 '계약금액'이라 한다)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.

## 제5조 (만기앞당김 지급)

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**만기일 전 1개월 안**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**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**한다.

#### 제6조 (이자)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.
- ② 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**월저축금을 약정한**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
-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

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,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매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
- ④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.
- ⑤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

## 제7조 (자유적립식예금 특례)

-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.
-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 제2항, 제5조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8조 (거래방법)

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.

## 제9조 (법령위반시 처리)

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, 저축한도 등 **거래조건을 위반한 것**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**그 예금을 해지**하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한다.

#### 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